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

(대표발의: 안 미 자 의원)

의 안 번 호	25-7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5. 8. .

발 의 자 : 안미자, 권영숙, 이상원,
이한동, 채우진, 최은하,
한선미, 홍지광

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
마포구 맞춤형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타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
라.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5조 및 제6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관계법령

『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2조, 제4조, 제
18조, 제34조

「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5. 8. 6. ~ 8. 12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특성과 마포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치경찰사무”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호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·교통·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.
2. “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”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2.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
3.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
4.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, 마포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·유지관리,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,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
2. 실종예방·대응,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, 성폭력 예방, 아동·여성·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·청소년 분야 사업
3.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·관리, 안전교육·홍보, 통행 제한·허가, 교통법규 위반 단속, 어린이통학버스 점검,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

4. 가정폭력·아동학대·노인학대·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,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마포경찰서, 마포구의회,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, 마포소방서 등(이하 “관계 기관”이라 한다)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
2.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2. 16.] [법률 제19023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찰의 사무)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. 다만,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.

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
1)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

2)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

3) 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

4)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의 예방

5)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.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.

6)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

나.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

1)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·단속

2)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리

3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4)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

5) 통행 허가,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,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

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

6)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

다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

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

1)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

2) 가정폭력, 아동학대 범죄

3)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

4) 「형법」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

5)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

6) 가출인 및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

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·도에 2개의 시·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·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, 관할구역, 사무분장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)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,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11. 10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882호, 2023. 10. 4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①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 제2항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. <개정 2023.7.24.>

③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23.7.24.>

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3.7.24.>

[제목개정 2023.7.24.]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,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
제4조의2(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,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.

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,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.

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·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⑦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7.24.]

제4조의3(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) 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7.24.]

제5조(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(이하 이 조에서 "추천권자"라 한다)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,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의안의 제안 및 상정)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·개최한다.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·개최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4.>

1. 안전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③ 제2항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(위원 중 일부는 대면,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)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4.>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10.4.>

⑤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0.4.>

제9조(관계자의 위원회 참석·답변 등)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른다. <개정 2023.7.24.>

제12조(실무협의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, 서울특별시 관계부서, 경찰청, 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실무협의회 회의)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

다.

1.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
2. 국가경찰사무·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
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사항
4.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처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실무협의회 간사)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.

제15조(실무협의회 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, 회의개최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6조(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)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둔다.

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제2항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7조(예산)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기 전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8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법 제35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,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위원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30.>

제20조(위원회의 감사)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·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(이하 "위원회세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제21조(위원회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제8882호, 2023.10.4.>

이 조례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
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
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: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윤석우
연 락 처	02-3153-8205